

지속가능경영 정책 종합

Leading A Sustainable Future With Green Cable Solutions



Contents

LS전선 지속가능경영 정책

03	LS전선 지속가능경영 정책
06	환경경영 정책
08	인권경영 정책
10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12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18	윤리규범
24	반부패 정책
26	조세정책
28	참고 문헌

서문

제정 목적

LS전선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이해관계자와의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고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하고자 모든 경영활동과 구성원의 올바른 행동 기준이 될 본 정책을 제정한다. 본 정책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과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 연합 (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행동규범을 참고했으며, 그 밖의 상세한 참고 문헌을 28페이지에 명시한다.

적용대상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국내외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에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관리조직

본 정책은 ESG경영팀을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개정이 필요한 경우,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내부 공지 및 개정 된 정책 내용을 LS전선 공식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본 정책은 2024년 7월 24일에 Version 1.0을 발간한다.

LS전선 주식회사

01

LS전선 지속가능경영 정책

LS전선은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서 지향점과 실천원칙을 담은 정책을 제정한다. 이는 당사의 주요 ESG 정책 및 입장을 공개함으로써 ESG경영 의지와 원칙에 대해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S전선의 모든 구성원은 ESG 정책과 입장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의 요구 수준에 맞춰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또한 LS전선과 거래하고 있는 이해관계자에게 당사의 지속가능경영 정책을 존중하고 준수하도록 권장하고 소통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1. 법과 윤리를 준수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1.1 법과 상도이에 따라 공정하게 경쟁한다.

- 국제 기준 및 국가별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함으로써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등)에 일절 관여하지 않으며 불공정한 독점행위를 하지 않는다.
-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부당한 방법으로 정보를 유출하지 않는다.

1.2 비윤리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 건전한 조직문화를 저해하는 행위 및 언행을 하지 않는다.
- 회사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지 않는다.

2. 청렴한 조직문화를 위해 노력한다.

2.1 부정청탁 및 선물, 뇌물, 금품 수수행위에 관여하지 않는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반부패와 관련된 법규 및 국제 협약을 준수한다.
- 구성원들의 부패활동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2.2 부당한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회사 공급이나 자산을 횡령, 유용, 절취하거나 경비를 변칙처리 하는 등 직위 및 직무를 이용하여 사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환경 친화적인 경영활동으로 전 지구적인 문제 해결에 동참한다.

3.1 국내외 사업장에 적용되는 환경법규를 준수한다.

- 환경법규 준수를 위해 보다 엄격한 사내 기준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오염 방지 활동을 통해 환경 관리에 힘쓴다.

3.2 사업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다.

- 자원 재활용과 오염물질 배출 저감 활동을 통해 순환경제를 실현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의 사업장과 시공 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환경 요소를 개선한다.

3.3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을 이행한다

- 2050 탄소중립 로드맵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 대부분의 사업활동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이 포함되도록 검토한다.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당사의 노력이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에게 전파되는 체계를 구축한다.

3.4 글로벌 기후변화 표준을 준수한다.

- 기후변화 대응 이행 경과 및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4. 인권과 다양성을 존중한다.

4.1 모든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한다.

-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근로조건과 관련된 법적 기준을 준수한다.
- 모든 업무수행 및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전반의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권을 존중한다.

4.2 모든 근로자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한다.

- 인종, 국적, 성별, 연령, 학력,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모든 구성원에게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능력과 성과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한다.

5. 대내외 이해관계자와 함께 상생경영을 추구한다.

5.1 고객 최우선(Customer First)의 가치를 실현한다.

- 고객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
- 고객에게 양질의 케이블 솔루션을 제공하고, 열린 소통을 함으로써 만족도를 제고한다.

5.2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와 상생의 관계를 구축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를 상호 신뢰의 기반 위에서 고객만족이라는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전략적 동반자로 인식한다.
-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이자 합법적으로 지원한다.
- 사업장의 안전과 구성원의 인권 존중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도록 비즈니스 파트너(협력사)에게도 적극 권장한다.

5.3 지역사회를 존중하고 보호한다.

- 사업과 연계된 지역사회 참여 활동을 발굴 및 수행하기 위해 지역사회 구성원과 소통한다.
- 지역사회 구성원의 기대 사항을 경영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지역사회와 공존하고 상생한다.

6.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6.1 기업시민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 조세납부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
- 주주 및 이해관계자에게 재무적 변동 등 주요 경영정보를 적시에 공정하고 성실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문서명	LS전선 지속가능경영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ESG경영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2

환경경영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LS전선은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해 환경성가를 지속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사업활동 및 가치사슬 전반의 부정적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 환경정책을 제정한다. 본 정책은 LS전선의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에 근거하여 제정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1) 환경법규 준수 및 환경영향 개선

- ① 환경·에너지 관련 국제 협약 및 법규를 준수하고 제품의 개발과 생산, 사용, 폐기 등의 전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 ② 친환경 생산공정 도입과 환경오염 방지 최적기술 적용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2) 원부자재

- ① 사업전략, 생산일정, 재고관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생산 아래 원부자재를 관리하고 투입을 최적화한다.
- ② 완제품의 자원사용량을 고려하고, 재사용 가능한 원료, 불순물이 적은 원료 등 친환경 물질로 대체한다.

(3) 에너지 및 온실가스

- ① 생산시설에 사용되는 에너지 소비와 설비를 모니터링하고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 ②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해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구축 및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 구매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한다.
- ③ 에너지 감축과 연계하여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이행 성과를 모니터링 한다.

(4) 수자원

- ① 사업장의 취수량 최소화를 위해 용수를 아껴쓰고, 재사용하는 활동을 지속하며 폐수 무방류 설비 및 정화설비 등 폐수 배출을 최소화한다.

(5) 폐기물

- ①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관·운반·처리 관리기준을 수립·운영한다.
- ② 케이블 생산 및 운송·사용 후 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재자원화 방안을 강구하며 폐케이블 부자재에 대한 재활용 확대를 위하여 처리업체와 협력하고, 자원 재활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한다.

(6) 환경오염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① 대기오염물질

먼지(Dust), 질소산화물(NOx), 염화수소(HCl), 불화수소(HF)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법적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내 기준을 설정·집행하는 방안을 통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② 수질오염물질

총유기탄소량(TOC),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부유물질량(SS), 총 인(T-P) 등 수질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법적 배출 허용기준보다 강화된 사내 기준을 설정·집행하는 방안을 통해 사업활동으로 인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한다.

③ 유해화학물질

국내외 산업안전 및 유해화학물질 관련 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유해화학물질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의 사용을 신고하고 구매·저장·취급·사용 등의 제반 절차를 수행한다.

(7) 제품 및 서비스

① 전과정평가

제품 전과정평가에 의한 환경 정보를 정량적으로 계량화함으로써 국내·외 제품 환경규제 강화에 대응한다.

문서명	환경경영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HSE부문, ESG경영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3

인권경영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LS전선은 회사의 경영활동 영향권 내에 있는 이해관계자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권정책을 수립한다. 인권경영 이행을 위해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유엔 기업과 인권이행지침(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ILO 선언 등 인권·노동 관련 국제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1) 인도적 대우

모든 구성원을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괴롭힘 성희롱을 포함하여 정신적 또는 신체적으로 비인도적 대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2) 강제노동 금지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행위를 금지하며,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구성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는다. 고용조건으로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 여권 또는 노동 허가증의 양도를 요구하지 않으며, 구성원에게 채용과 관련된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는다.

(3) 아동 고용 금지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지역 법규에서 정한 최저 고용 연령 기준을 준수한다.

(4) 산업안전 보장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위한 최선의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 고용 시, 안전보건 측면에서 위험한 작업, 야간근무, 초과근무에 투입하지 않는다.

(5) 차별금지

구성원의 성별, 인종, 피부색, 연령, 성 정체성, 출신 민족/국가, 장애여부, 임신여부, 결혼여부, 종교, 정치성향, 노조 활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의 이유로 채용, 임금, 승진, 보상, 연수기회 제공 등 인사 프로세스상에서 차별적 처우를 하지 않는다.

(6) 근로시간 준수

각 국가 지역의 노동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정규, 초과 근로시간 및 휴무 규정을 준수한다.

(7) 임금과 복리후생

모든 구성원에게 최저 임금 이상을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하고, 법 또는 계약에서 필수적으로 정한 복리후생을 제공한다. 초과근무 시 법정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을 포함하여 임금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정해진 시간내 정확한 임금을 지급한다.

(8) 결사의 자유

건전한 조직 발전을 위해 회사와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부여한다. 또한 각 국가 및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따라 단체협약과 평화적 집회를 위한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며, 노동조합 가입 및 활동 또는 결성 등을 이유로 부당한 처우를 하지 않는다.

(9) 지역사회 보호

모든 구성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지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한다.

(10) 환경권 보장

환경오염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며 기업 활동으로 인한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경영 정책 및 방침을 수립한다.

문서명	인권경영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인사기획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4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본 정책은 '함께하여 더 큰 가치' 추구하는 LS Partnership 경영철학을 실현하고 LS전선 및 출자법인 전 구성원에 대한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을 개선하고, 직장 내 차별, 괴롭힘 및 성희롱을 방지하여 구성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건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1) 다양성 및 포용성

다양성은 문화, 성별, 국적, 인종, 종교 또는 신념, 사회적 경제적 지위, 능력 등 구성원의 특성을 존중하는 것을 의미하고, 포용성은 모든 구성원이 조직에 소속감을 가지고 업무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여 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유지한다.
- 모든 구성원이 회사 업무 과정에서 자신의 능력, 경험, 지식을 활용하여 기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구성원이 개인의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간, 장소, 방법 등에서 유연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직 간의 벽을 없애고 열린 의사소통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기업문화를 지향한다.
- 특정 구성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장애를 이유로 그들을 회사에서 소외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

- 다양한 세대가 각기 다른 능력을 제공하면서 공존하고, 다양한 배경 국적, 인종의 구성원이 모여 함께 일하는 곳임을 인식한다.
- 결혼 여부, 이혼 여부, 자녀 유무 등 가족 관계가 서로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 능력에 기반한 승진 제도를 도입한다.
- 구성원 채용, 관리, 교육 과정에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형평성

형평성은 구성원이 개인적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승진, 채용, 교육에서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고 다음의 사항을 준수함으로써 그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

- ① 인종, 국적, 성, 연령, 학벌, 종교, 지역, 장애, 결혼여부, 성 정체성 등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이유로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 ② 회사, 계열사, 공급·협력업체 내에서 양성평등의 원칙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한다.
 -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여성 구성원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 직장 내 개인의 성장이 성별을 이유로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동일한 업무, 가치가 동일한 업무에 대해서는 동일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
 - 구성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기반한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직무 자격 요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에 있어 평등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다.
 - 사회적 배경, 문화적 배경, 학력에 따른 편견 없이 타인을 대우한다.

문서명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인사기획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5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본 정책은 전 협력사에게 기업경영 활동에 적용되는 법률 및 규정을 철저히 준수함과 동시에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경영시스템 분야에서 최선의 운영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LS전선은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여 더욱 존경받는 기업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상호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를 위해 협력사들과 공동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은 LS전선(국내외 출자법인 포함)에 재화와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한 모든 협력사에 적용됩니다. 또한 본 정책의 적용 대상인 협력사는 그들의 공급망(하위 공급망)에 본 정책을 실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협력사 책임과 역할

모든 협력사는 사업운영과정에 있어 본 정책이 제시하는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LS전선은 협력사가 본 정책을 준수하고 있는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점검 및 실사하기 위하여 협력사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점검 및 실사는 LS전선 또는 LS전선의 위탁을 받은 제3의 기관을 통해 진행될 수 있으며, OECD 실사 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합니다. 이러한 점검 및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LS전선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확인된 리스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협력사는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상호협의를 바탕으로 개선 계획 수립 및 이행 조치를 수행해야 합니다. 본 정책은 협력사의 의무사항을 모두 명시한 것은 아니며 LS전선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보완 및 개정될 수 있습니다.

4. LS전선의 노력

LS전선은 협력사와 거래 계약 체결 시 본 정책을 공유하고 있으며, 정기 실사를 통해 본 정책 준수를 강조하고 개선하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협력사 및 협력사 근로자가 LS전선과의 거래 관계 및 사업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고충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도록 비윤리행위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보는 익명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II. 기본원칙

1. 준법·윤리경영

협력사는 준법·윤리경영을 실천하고 기업을 바르게 경영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고 수준의 윤리 기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1) 법규 준수

LS전선과 거래하는 모든 협력사는 거래 관계 및 영업 활동에 있어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해야 합니다.

(2) 비즈니스 청렴성 및 공정거래

협력사 및 그 임직원은 거래 관계에서 청렴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 형태의 뇌물도 제공하거나 수령하지 않아야 하며, 횡령 등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해야 합니다.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자유 경쟁을 저해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3) 상생협력

협력사는 상생협력을 위한 당사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정한 거래관계가 지속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합니다.

(4) 지적재산권 보호 및 위조 사용 금지

협력사는 당사를 포함해 공급망 내 모든 협력사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영업비밀, 내부정보, 기술/노하우 등 상호 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위조부품 또는 무허가 원료 및 부품을 사용하거나 생산, 판매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고객사, 협력사, 임직원 등)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정보보안 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6) 책임 있는 원자재 구매

협력사는 구매한 원자재가 생산, 유통되는 중 심각한 인권침해, 혹은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당사와의 거래 시 분쟁광물*)을 당사 허가없이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콩고 및 주변국에서 생산되는 주석, 텅스텐, 탄탈럼, 금. (혹은 이와 유사하게 국제적으로 규제중인 광물)

2. 환경보호

협력사는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제조공정에 있어 환경 영향을 파악하고, 지역사회, 환경 및 자연자본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1) 환경 법규 준수

협력사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모든 환경 관련 인허가 및 등록사항을 취득, 유지, 관리하며 최신 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2)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저탄소 에너지원, 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 효율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여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합니다.

(3) 오염물질 배출

대기, 수질 오염물질 배출 시, 관리법을 준수하고 배출원과 배출량을 상시적으로 파악·관리해야 합니다.

(4) 폐기물 관리

협력사는 제품 생애주기 동안 폐기물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임직원 및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방법으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며 매립 및 소각되는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고 폐기물 재사용을 확대해야 합니다

(5) 환경규제 준수

협력사가 사업을 수행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특정 물질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물질의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물질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등 물질 관련 규제가 있는 경우, 협력사는 이와 같은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 등)

(6) 녹색구매

협력사는 동일 용도인 다른 자재에 비해서 환경 부하가 적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재를 구매하도록 가능한 한 노력해야 합니다.

3. 인권 존중

협력사는 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장소에서 국제적으로 선포된 「UN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을 지지하고 존중하며 인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어떠한 편견과 불법적인 차별 없이 구성원들이 잠재력을 발휘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 인권 규범 준수

협력사는 모든 구성원 및 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어떠한 부당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세계인권선언 및 ILO*) 가이드라인 등 국제 수준의 규범과 국가별 현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2) 다양성 및 포용성

협력사는 임직원의 다양성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다른 관점과 신념이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차별 및 괴롭힘 금지

협력사는 성별, 인종, 나이, 피부색, 종교, 혼인, 출신국가, 정치적 견해, 장애 여부, 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임직원의 고용, 승진, 교육 등의 대우에서 차별하거나 괴롭혀서는 안됩니다.

(4) 단체결사 및 단체 교섭의 자유

각 국가 또는 지역의 노동관계 법규에 의한 결사의 자유 및 단체 교섭권리를 보장하고 노동조합 가입 및 결정,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됩니다.

(5) 지역주민 인권

협력사의 모든 임직원은 업무 수행 시 지역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지역주민의 안전보건에 대한 권리, 거주지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6) 아동 노동 금지

협력사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국가의 법규에서 정하는 취업 최저연령에 미달하거나, 의무교육 종료 연령에 미달하거나, 15세에 이르지 않은 아동 및 청소년을 고용해서는 안됩니다.

(7) 강제 노동 금지

협력사는 노동력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 행위, 폭행·협박·감금 등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여 임직원의 자유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4. 안전 관리

협력사는 안전 및 보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며 잠재적 안전 위험요소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안전보건 제도 준수

협력사는 안전보건과 관련한 국가별 법제도 및 회사 규정을 준수하고, 안전한 사업장 유지·관리 및 임직원의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직·계획·절차를 갖추고 이행해야 합니다.

(2) 위험성 평가

임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위험요소 평가 및 제거, 지속적인 교육과 비상대응 훈련, 개인 보호장비 제공 등 법적 요구사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합니다.

(3) 비상사태 대응 프로세스

비상대책과 대응절차를 수립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며 산업재해와 직업별로 관리할 수 있는 절차와 시스템을 확립해야 합니다.

(4) 위생 및 안전보건

임직원에게는 모든 시설을 청결하게 유지, 제공해야 하며 육체 노동위험을 사전 통제해야 하며 생산설비나 기타 설비의 안전상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5) 화학물질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정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이 운송, 보관, 사용, 폐기 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취급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및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표기해야 합니다.

(6) 설비 안전관리 및 안전 장비 지급

협력사는 사업장 내 유해하거나 위험한 설비에 대한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평가, 점검해야 하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임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이는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유지/관리되어야 합니다.

5. 경영시스템

협력사는 지속가능한 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1) 정책 준수 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준의 지속가능경영 이행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해야 합니다.

(2) 법률 및 고객 요구사항 이해

본 정책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법률, 규정 및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여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3)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가능한 윤리, 환경, 노동·인권, 안전·보건 분야의 리스크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중대한 리스크 발생 시, 해당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4) 자가평가 및 시정조치

협력사는 본 정책을 포함한 현지 법 및 규정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정기적으로 자가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발견된 결함을 적절하게 시정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5) 고충처리 제도 운영

협력사는 그 임직원이 윤리·환경·노동·안전에 대한 고충/불만사항을 보복 또는 위협의 두려움 없이 비밀리에 알릴 수 있는 고충처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제도에 대해서 임직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문서명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구매기획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6

윤리규범

I. 개요

1. 제정목적

LS전선은 'LSpartnership'을 기업경영철학으로 삼고, 윤리성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 신뢰의 행동을 통해 탁월한 성과를 만들며, 외부적으로도 열린 마음으로 협력한다. 이를 위해 LS전선의 모든 임직원들이 지켜야 할 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 LS전선 윤리규범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실천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한다.

1.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제 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LS전선은 고객의 의견을 항상 존중하고 고객에게 도움되는 가치를 창출하여 신뢰를 확보한다.

1. 고객존중

-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고객의 요구는 항상 옳다고 생각한다.
- 고객 만족을 모든 판단 및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2. 진실한 정보 제공

- 고객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허위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 고객이 마땅히 알아야 할 사항은 감추지 않는다.
- 경쟁사 제품에 대해 비방하거나 근거 없는 비교는 하지 않는다

3. 고객에 대한 응대

-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으로부터 A/S실시요청, 정당한 교환요청 및 반품요구가 있는 경우 신속히 응답한다.

4. 고객에 대한 가치 제공

-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으로 항상 최고의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5. 고객의 이익 보호

- 고객의 재산을 내 것처럼 보호하고 임의로 사용하지 않는다.
- 고객과 관련된 정보를 취득한 경우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 고객의 이익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임직원이 회사의 윤리적 기준을 위반하는 행위는 해고 또는 법원에서의 제소를 포함하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1. 직위·직무를 이용한 부당행위 금지

- 재직 중에 직무상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 피고용을 약속 받거나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개인적인 사업상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산 임차·금전 대차 거래를 하지 않는다.
- 상위자는 그 조직 또는 하위자에게 개인적 용무를 시키거나 묵시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2. 정직·공정한 보고

- 사실과 다르게 문서·계수를 조작하거나 허위 보고 함으로써 상위자 및 관련 부서의 의사결정을 오도하지 않는다.

3. 품위유지

-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비도덕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유언비어의 조성·유포 등 조직 내 불신 풍조를 조장하거나 건전한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4. 회사와 이해 상충 행위 회피

- 회사와 이해관계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외부 업체를 직접 운영 또는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와의 사전 협의 없이 담당 직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 또는 협력업체의 운영에 관여하거나 출자하지 않는다.
- 회사의 경쟁업체 또는 협력업체에 이중으로 고용되거나 회사의 이익과 상충되는 상담·조언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 타 회사에 고용되는 경우 회사에 사전 보고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5. 직장 내 성희롱 방지

- 자신의 언행이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항상 조심하여야 한다.
-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회사 내에서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 생활에 지장이 생기거나 인격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6. 자기계발

- 임직원은 국제화 시대에 바람직한 인재상이 될 수 있도록 자기 계발에 힘쓴다.
- 맡은 바 직무에 대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제 3장. 공정한 경쟁(경쟁자)

LS전선은 전 세계의 모든 사업 활동에서 해당 지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정당한 방법을 통하여 경쟁의 우위를 확보한다.

1. 정당한 정보의 입수 및 활용

- 부당한 방법으로 경쟁사의 정보나 영업비밀을 취득하지 않는다.
- 정당하게 입수된 경쟁사 정보일지라도 부당하게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2. 정당한 경쟁우위 확보

- 경쟁사가 보유한 모든 분야의 유·무형자산을 도용하거나 무단 침해하지 않는다.
- 광고 등을 통해 경쟁사에 대해 비방하지 않는다.

3. 담합 금지

- 경쟁사와 판매가격, 판매 조건 및 지역 배분 등에 대해 담합하지 않는다.
- 동종거래처들과 부당한 협의체 또는 담합기구를 구성하거나 가입하지 않는다.

4. 법규 및 상관습의 존중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 활동은 해당 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 관습을 존중한다.
-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국제상거래 뇌물방지협약과 국내법 국제상거래 뇌물 방지법을 준수한다.

제 4장. 공정한 거래(협력업체)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어야 하고 투명한 거래를 통해 상호 신뢰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1. 공정한 절차에 의한 거래처 선정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 공정한 거래와 평가

- 공정하게 평가된 거래 결과를 거래처에 통보하고 다음 거래에 반영한다.
- 거래의 개선 및 혁신을 위해 제시된 건전한 의견은 업무에 적절하게 반영한다.
- 거래처의 기술이나 기타자산을 사용할 경우 반드시 거래처의 승인을 얻는다.
- 회사가 명백히 잘못하여 거래처가 피해를 입은 경우는 공정하게 배상한다.
- 공정거래 관련 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깨끗한 거래 질서의 유지

- 거래처로부터 금품·용역·향응·기타 편의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 거래와 관련하여 혈연·지연·학연 등 특수관계에 의한 청탁이나,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외부 압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 거래 과정 중 알게 된 협력업체의 정보 및 기술을 명시적 사전승인 없이 이용함으로써 협력업체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다.

4. 협력업체의 지원

- 협력업체의 실질적인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 육성 지침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 상기 지침은 협력업체의 자격, 권리, 의무를 명시하고, 기술지원 및 경영지도 등 실질적 육성을 위한 운영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

제 5장.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책임

LS전선은 모든 임직원을 인격체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1. 인재의 육성

- 임직원을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이를 지원하며 활성화시킨다.
- 상사는 부하를 도전적이고 강인한 인재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로, 부하의 적성과 소질을 고려하여 필요한 충고와 지도를 아끼지 않는다.

2. 능력과 업적에 의한 대우

- 임직원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며, 학벌, 성별, 연령, 출신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는다.
- 능력과 업적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정립·공개하고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공정한 경쟁풍토를 조성한다.

3. 건전한 의사표시의 보장

- 임직원이 자유롭게 제안·건의하고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분위기를 조성한다.

4. 건강·안전에 대한 책임

- 임직원의 건강과 업무 수행상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위험물·유해물이 있는 작업장의 경우 필요한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제 6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책임

LS전선은 합리적인 사업 전개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함으로써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1. 비도덕적·반사회적 기업활동 금지

- 밀수, 부동산 투기 등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행위 또는 국민 정서에 위화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2. 국가·사회발전에 대한 공헌

- 학벌, 성별, 출신 지역별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균등한 고용의 기회를 부여한다.
- 조세는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한다.
- 사회 각계각층과 지역 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며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 임직원의 건전한 사회봉사 활동 참여를 보장하고 권장한다.

3. 주주 이익의 보호

-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직무상 취득한 내부 또는 타기업의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의 매매 등을 하지 않는다.
- 대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

4. 환경의 보호

- 환경보호에 위배되는 사업 활동을 금지하며, 공해 및 오염 방지를 위해 투자한다.
- 환경보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환경보호 활동을 전개하며, 환경보호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문서명	윤리규범	버전	1
제정일자	2006. 6. 1	개정일자	2024. 7. 24
제개정부서	경영진단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7

반부패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LS전선은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반부패와 관련된 글로벌 법규 및 Standard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본 정책은 회사의 유무형 자산에 피해를 주고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인 부패 및 뇌물 관행의 발생을 방지하고, 윤리·도덕적 가치 기준에 따라 적극 실천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1) 법령 준수

모든 거래에서 뇌물 및 부패방지와 관련된 현지 법령 또는 국제 표준을 준수한다. 비록 사회적 또는 비즈니스의 관행에 의해 이루어진 행위라 하더라도 글로벌 반부패 법규, 표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2) 뇌물 수수 및 공여

국가기관의 공무원, 공공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구성원 등에게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 약속 또는 제안하지 않는다. 또한, 통상적인 절차나 용역이 보다 신속히 진행되도록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명목상의 급행료*나 업무촉진비의 제공은 금지된다.

(3) 부정청탁

사업상 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이해관계자에게 업무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가를 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해관계자가 회사 또는 협력사와 부당 거래를 하도록 알선, 청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한 특정 거래처나 협력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4) 선물 및 접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 공정한 업무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선물이나 접대는 뇌물수수 행위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건전한 업무 관계 형성을 위한 선물 및 접대와 관련하여 국가별로 특유의 법령, 문화, 관행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합법적이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어야 하며 부득이하게 수취한 경우에는 내부 관리 정책에 따라 조치한다.

(5) 기부금 또는 후원금

기부금 또는 후원금은 내부 집행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하며, 어떠한 구성원도 회사의 이름으로 또는 회사를 대신하여 정당, 정치인 등에게 기부금 또는 후원금을 제공하지 않는다.

*) 정부 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소정의 뇌물을 지불하여 일상적인 절차 처리 속도를 높이거나 행정상 지연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

문서명	반부패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법무/Compliance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08

조세 정책

I. 개요

1. 제정목적

LS전선은 국내외 조세 법규를 준수하고 세무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정책을 수립한다. 조세 정책 제정 및 공개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가치를 제고하고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2. 적용범위

본 정책의 적용범위는 LS전선 구성원으로 한다. 출자법인을 비롯하여 LS전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본 정책에서 다루는 사항이 현지 국가의 법규와 상충되는 경우에는 현지의 법규를 우선적으로 준수한다.

II. 기본원칙

(1) 법규 준수

- ① LS전선은 국내 법규 뿐만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각 국가의 세법 및 조세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 ② 조세 구조 차이를 이용한 국가간 소득이전을 금지하고,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법적 실체를 운용하거나 조세 회피처를 활용하지 않는다.

(2) 신고 납부

- ① 모든 거래 시 각 국가의 법령에 따라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 의무를 이행한다.
- ② 각 국가의 과세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적시에 관련된 사실관계와 증빙을 제공한다.

(3) 조세 리스크 관리

- ① 주요 경영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조세 관련 사안에 대해 사전 세무검토를 수행하고, 세제정책 개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한다.
- ② 중요 사항에서 필요시 외부 조세 전문가의 자문을 활용해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

(4) 외부 공시

- ① 회사의 납세 정보는 국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내 감사보고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한다.
- ②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상 재무제표 및 주석에서 법인세비용 산출 기준, 이연법인세 자산 및 부채, 법인세비용 구성 내역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통해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한다.

(5) 이전가격 정책 실시

- ① LS전선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각 국의 법규에 따른 정상가격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이전가격 거래에 대해서는 BEPS*) 보고서 및 이전가격 보고서를 외부 세무 전문가와 작성하여 이행 상황을 관리한다.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다국적 기업이 조세조약상으로 유리한 세율이 부과되는 국가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하는 행위

문서명	조세 정책	버전	1.0
제정일자	2024. 7. 24	개정일자	-
제개정부서	회계팀	관리부서	ESG경영팀

참고 문헌

정책	문헌 상세
환경경영 정책	• LS전선 안전보건환경 경영방침 • ISO 14001
인권경영 정책	• UN 기업 및 인권에 관한 기본 원칙(UNGPs) • UN 세계인권선언 • 국제노동기구헌장(ILO)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정책	• GRI, Standards 405-Diversity and Equal Opportunity(2016) • ISO 30415:2021 Human Resource Management
협력사 지속가능경영 정책	• RBA(Responsible Business Alliance) 행동규범
윤리규범	• LS전선 윤리규범 전문 및 해설
반부패 정책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미국해외부패방지법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 Act) • 영국뇌물방지법(UK Bribery Act) • UN 부패방지협약
조세 정책	• 대한민국 세법 •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공통	•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